

3.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자료제공 : 한국은행

| 현행 | 개정 | 비고 |
|---|---|--|
| <p>제1조~제2조 (생략)</p> <p>제3조(여신의 금지) 금융기관이 <별표>의 “여신금지부문”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과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정하는 총액한도 대출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여신 2.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인정하는 여신 3. 「주택건설촉진법」에 의거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4. 「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사업관련 여신 <p>제4조(담보취득의 제한) 금융기관은 여신취급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</p> | <p>제1조~제2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| <p>- 여신금지부문폐지</p> <p>- 담보취득의 제한 폐지</p> |

| | | |
|---|--|---|
| <p>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한국은행 총재가 중소기업지원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면적의 1/2이상이 <별표> 제3호의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당해대지 2. 연면적의 1/2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건물 및 당해대지(주택 및 당해대지 제외) 3.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 제18조에서 정한 법인소유 비업무용부동산 및 동 「규칙」을 준용하여 판정된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비업무용부동산 4. 「토지초과이득세법」 제8조에서 정한 개인소유 유희토지 등 5.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84조의3에서 정한 사치성재산 6. 제3자명의 부동산 <p>제5조~제8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| <p>제3조~제6조 (현행과 동일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정은 1998. 1.26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- 조례상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시행일자 명시</p> |
|---|--|---|

| 현행 | 개정 | 비고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별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신금지부문</p> <p>1. 토지의 매입</p> <p> 다만,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제외한다</p> <p> 가. 서민주택건설용</p> <p> 나. 여신취급일(다만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중 선분양되는 산업단지의 입주예정업체인 경우에는 토지분양대금 최종회차분 납입일과 산업단지조성 완공일중 조기도래되는 날)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건설용</p> <p> 다. 실수요자의 농지용</p> <p> 라.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은 학교법인의 교지용</p> <p> 마. 비영리법인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사옥건설용</p> <p> 바. 「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」에 의한 제1종시설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용</p> <p>2. 세대당 100호를 초과하는 주택(아파트 포함), 오피스텔, 스키장 및 유원지(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업소 제외)의 건설 또는 매입과 콘도미니엄의 매입</p> | <p>(삭제)</p> | <p>- 규정 제3조 삭제에 따른 <별표></p> |

| 현 행 | | 개 정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--|
| 3.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 | | | |
|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 류 번 호 | 업 종 명 | | |
| 3694중 |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| | |
| 5521중 | 건평 또는 대지 330㎡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. 다만, 다음의 경우는 제외 1.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2.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하여 지정된 관 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3.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“좋은식단”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| | |
| 5522 | 주점업 | | |
| 70 | 부동산업(다만, 공장건물 및 서민주 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「도·소매 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 의 당해시장 임대업에 대한 시장신 축 또는 증·개축자금은 제외) | | |
| 92191중 | 「댄스홀」, 「댄스」 교습소 | | |
| 92434 | 골프장운영업 | | |
| 92496 | 도박장운영업 | | |
| 93092중 |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 | | |

해설

I. 여신금지제도 폐지 배경

최근 금융의 개방화와 자율화 진전 및 경제·사회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여신금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자율적 판단으로 여신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.

여신금지부문을 폐지하더라도 이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
- 부동산실명제 실시, 부동산 종합전산망 구축 등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데다 최근 부동산거래가 크게 부진하고 가격도 하락세
- 외환위기이후 근검·절약 분위기 확산으로 사치·향락성 소비도 크게 위축

△ 앞으로 한정된 금융자금이 부동산투기와 사치·향락성 산업에 지원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면에서의 규제보다는 세제·행정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

II. 기대효과

△ 금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여신 및 담보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졌으므로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여신을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Ⅲ. 폐지대상 여신금지현황

□ 여신금지부문

1. 토지의 매입(단 서민주택건설용, 공장건설용, 실수요자 농지용, 학교 교지용, 비영리법인 사옥용, 제1종시설사업 및 도로건설사업용은 제외)
2. 세대당 100㎡초과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, 오피스텔, 스키장 및 유원지의 건설 및 매입, 콘도미니엄업의 매입
3. 여신금지업종
 - △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, 주점업,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, 골프장운영업, 도박장운영업,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, 부동산업, 건평 또는 대지 330㎡ 초과 식당업
 - 부동산업의 경우 공장건물·서민주택 임대업 및 재래시장 임대업은 제외
 - 식당업의 경우 기관구내식당,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소재 식당업, “좋은식단”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제외

□ 담보취득 제한(중소기업 제외)

1. 연면적의 1/2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당해대지
2. 연면적의 1/2 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건물 및 당해 대지(주택 및 당해대지 제외)
3. 법인소유 비업무용부동산 및 개인기업 영위자의 비업무용부동산
4. 개인소유 유희토지
5. 사치성재산
6. 제3자명의 부동산

주택회보